

제 호

국가중요농·어업유산 지정서

1. 유산의 명칭
2. 유산 지정지역
3. 관리기관

상기 농·어업자원을 「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」 제30조의2제1항 및 제30조의3제1항에 따라 국가중요농·어업 유산으로 지정합니다.

년 월 일

농림축산식품부장관
해양수산부장관

직인

[illegible]